

---

#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

---

2018. 5. 10.

관계부처 합동

# 순서

<b>I. 추진배경 및 경과</b> .....	<b>1</b>
<b>II. 문제점 진단</b> .....	<b>1</b>
<b>III. 추진방향 및 단계별 대책</b> .....	<b>2</b>
1. 제조·생산 .....	2
2. 유통·소비 .....	3
3. 분리·배출 .....	4
4. 수거·선별 .....	5
5. 재활용 .....	6
6. 홍보·교육 .....	7
<b>V. 향후 추진계획</b> .....	<b>8</b>

## I 추진배경 및 경과

-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(4.1) 이후, 긴급대책 발표(4.10, 국무회의)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
-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(4.16~)
  - 특히,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(폐비닐·페트병 등)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,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
  - \* EU, 英 등 다른 국가도 플라스틱 폐기물 위주의 감량·재활용 대책 추진 중

## II 문제점 진단

- **(제조·생산)** 화려한 색상, 분리가 어려운 라벨,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\*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
  - \*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가장 쉬운 1등급 페트병은 1.8%에 불과('15)
- **(유통·소비)**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,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,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\*
  - \* (1회용컵) 191억개('09) → 257억개('15), (비닐봉투) 176억개('09) → 211억개('15)
- **(분리·배출)** 분리배출은 일상화되었지만,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·안내는 부족하여 재활용 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\* 혼입
  - \* 분리배출되어 나온 재활용 폐기물 중 38.8%가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('16)
- **(수거·선별)**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음에도 민간수거\*에 의존(약 70%), 처리업체·처리량 등 기본적 현황 파악 미흡
  - \* 민간 수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고물상으로, 시장 변동 등 외부적 충격에 취약
- **(재활용)** 재활용비용 상승, 유가변동 등으로 재활용업계 수익성은 지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,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 또한 제한적

### III 추진목표 및 단계별 대책

□ (목표) '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% 감축, 70% 재활용

(’22년 30%) (現 34.4%→’22년 50%)

□ (전략) 정부·지자체·생산자·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여,

-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·소비구조 확립
-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

#### <1> 제조·생산

◇ 제조 단계부터 **재활용이 쉽게 생산**하고, **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**

\* 음료·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: 36.5%(’16) → 15.5%(’19) → 0%(’20)

◇ **생산자의 책임을 강화**하여, **재활용 촉진**을 위한 **지원 확대**

□ (제품 설계)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

-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**재활용 용이성 평가**를 의무화하고,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·유리병 등의 생산자에게 **재활용비용(EPR 분담금) 차등 부과**(’19~)
  - \*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에 따라 페트병, 비닐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특히, 환경에 유해하고 **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(PVC 등)**, 유색 페트병(음료·생수)은 **사용금지 추진**(자원재활용법 개정, ’18~)
-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**유색병은 무색으로,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평가 후 개선 권고**(’18.10) 및 미 이행시 **제품명 공개**(’19)
  - \* 주요 생산자 MOU 체결(’18.4)을 통해 업계의 **자발적 이행 독려**

재활용이 어려운 사례					개선 사례	
						
유색	유리	화장품	알루미늄 뚜껑	PVC 재질	종이라벨	무색,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

- (생산자 책임 강화)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(EPR 분담금)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, '18~)
  -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\*하고,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\*\*
    - \* 현재 43개인 EPR 대상 품목을 '22년까지 총 63개로 확대
    - \*\* 페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 우선 증액('18.6, 현재 전체 생산량 중 66.6%만 부담)
      - 생산량 중 일부가 아닌 생산량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 추진(자원재활용법 개정, '19)

## 〈2〉 유통·소비

### ◇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,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

\* '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% 저감

-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
  - (운송포장재) 대형 온라인 마켓·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('18.10)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(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, '19)
  - (일반포장재)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진열·판매를 금지하고(자발적협약, '18.4),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제한기준 신설('18.9)
- 소비단계 사용 최소화
  - (1회용컵) 1회용컵 감량·회수·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 추진
    - \* (감량) 텀블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(자발적 협약(판매가 10% 수준 할인), '18.5)
    - \* (회수) 테이크아웃 컵 회수 촉진을 위한 컵보증금제 도입(자원재활용법 개정, '18~)
    - \* (재활용) 커피·음료 전문점의 재활용비용 부담 의무화(자원재활용법 개정, '18), 재질 단일화(자발적협약, '18.5)
  - (비닐봉투) 대형마트·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,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,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 촉진 등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

<참고: 비닐봉투 사용처별 관리 강화>

구분	백화점	대형마트	대형슈퍼	편의점	소규모슈퍼	제과점	재래시장
업체 수	97	537	9,649	26,874	49,788	16,082	-
현재 규제	무상제공 금지					-	-



추진 방향	사용 금지 * 속비닐 50% 감축(대형마트)	무상제공 금지 * 대형봉투는 중량제로 전환	무상제공 금지	무상제공 금지	장바구니 대여사업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

## □ 현장 이행 강화

- (제도 개선) 제품 출시 이전 과대포장 검사 의무화\*(자원재활용법 개정 '18~), 1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 상향\*\*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, '18.6~)

\* 현재는 지자체의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일부 제품만 사후적 검사 실시

\*\*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소규모 업소 기준 5만원, 중규모 업소 기준 10만원에 불과

- (점검 강화) 지자체·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, 과대포장 점검 및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을 연중 상시 실시

\*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

## □ 공공 부문 솔선수범

- (1회용품 사용 억제) 전 부처·공공기관 대상 지침을 마련('18.6)·시행하고, 사용저감 노력 및 성과를 지자체·공공기관 평가에 반영

<참고: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>

- ◆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,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
- ◆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,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제공
- ◆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(장바구니·종이박스 사용 권장)
- ◆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(빗물제거기 설치)

- (수돗물 병입수 개선) PET병 경량화 및 재질·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

## <3> 분리·배출

◇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,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

\*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: 38.8%('16) → 10%('22)

- (집중 홍보) 분리배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,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TV 등 매체별 홍보, 스마트폰 앱 개발·보급('18.5~)

- (사회적 일자리)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안내 및 모니터링 추진('18.6~)
- (가이드라인 보급) 국민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(그림 등 시각적 콘텐츠 포함) 마련·배포('18.6)
- (인프라 확충)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(재활용동네마당) 지속 확충

#### 〈4〉 수거·선별

##### ◇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,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

- (공공관리 체계 강화) 공동주택·민간수거 업체 간 계약 내용, 처리실적 등에 대한 지자체 보고 및 수거중단시 사전통보 의무화(폐기물관리법 개정, '18.6~)
  - (비상 대응) 수거중단 발생 시 즉시 보고, 단가조정 중재 및 임시 직접처리 등 지자체가 적극 대응토록 매뉴얼 정비('18.5~)
  - (이행 강제) 생활폐기물 처리 조치명령(환경부→지자체) 및 이행 의무화, 미이행시 행·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 신설(폐기물관리법 개정, '18.6~)
  - (공공 인프라)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선별장 확충(現 서울14, 인천1, 경기30)
- (민간 수거업체 지원)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수거 단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 보급
  - (수익 안정화) 수거업체 주요 수입원인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실태조사\*(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), 품질 자율등급제를 도입하여 적정가격 관리
    - \* 유통단계(고령층 수집인→고물상→압축장→제지사)별 납품단가 등 모니터링
    - 재활용품에 대한 세제혜택 추진('18년 종료 예정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)
  - (고물상 환경개선) 환경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, 기준 충족을 전제로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
- (민간 선별업체 지원) 생산자의 EPR 재활용 지원금 확대('18.6~)

## 〈5〉 재활용

- ◇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,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
- ◇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, 수요처를 대폭 확대

- (시장 안정화) 수출입 동향, 유가 및 재활용품 가격 변동 등을 분석하고, 재활용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
  - (안정화 재원)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(19~)하고, 가격 하락 등으로 폐기물 적체 우려가 있을 경우 구매·비축 등에 활용
  - (수입관리 강화) 폐기물 수입 시 환경부·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, 국내 재활용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를 강화(18.4~)하여 수입물량 조정
  - (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) 제지·유리병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를 상향조정(18.하) 및 이행모니터링 강화
- (재활용 수요 확대) 재활용제품(하수관거, 건설자재 등)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및 조달 관련 지침·규격 보완, 조달 가점 조정 등 우대 조치(18.10)
- (R&D) 고품질 선별기술, 페비닐·페트 등 재활용제품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(18~), 품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R&D 로드맵 마련(18.하)
- (고형연료제품(SRF)\* 관리개선)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주민감시체계 도입, 환경기준 강화로 주민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
  - \* 페비닐 등을 선별하여 성형 또는 비성형 처리하여 만든 고형연료(Solid Refuse Fuel)
  - 생활계 페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는 검사·조사를 통합·운영하고,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 확대(환경안전성 검증 전제)

## <6> 홍보 · 교육

- ◇ **대국민 홍보 국민참여 실천운동**으로 전국민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 유도
- ◇ **현장 중심 맞춤형 환경교육**으로 자원 재활용 인식 제고

- (집중 홍보) 1회용품 줄이기 등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(~'18.6.5, 환경의 날)  
→ 국민 참여 실천운동으로 확대(~'18.9.6, 자원순환의 날)
  - (매체 홍보) 기획보도, 예능,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활 속 실천요령 등 집중 홍보('18.4~)
  - (실천운동) 시민단체·지자체가 참여하는 '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' 구성(발대식, '18.6), 사회 각계·각층의 의지표명 및 국민참여 요청
    - \* 환경의 날(6.5)을 '플라스틱 없는 날(1회용품 없는 날)'로 선포
  - (국민 참여) '플라스틱 줄이기 약속 릴레이' SNS 이벤트, 대국민 참여 공모전, 경연대회 등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캠페인\* 추진
    - \*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(7.3) 계기 장비구니 사용 캠페인(시민단체, 대형마트·편의점 공동) 자원순환의 날(9.6) 행사 시 '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서약' 이벤트 실시 등
- (환경 교육) 청소년, 주민 등 대상 맞춤형 환경 교육 확대
  - (초·중등) 방과후 수업 및 자율학기제 환경교사 파견 등으로 현장중심 교육 진행('18.7~)
  - (주민) 주민·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, 시민단체와 함께 분리배출 교육·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(에코리더 등) 양성, 지역별 실천운동에 활용
  - (체험 기반 강화) 권역별 업사이클 센터 등을 지역별 자원순환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허브(hub)로 육성, 전시·교육 추진('18.5~)



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



업사이클 센터

**N**

**향후 추진계획**

구분	전략	세부과제	추진 일정	소관부처
제조·생산	제품설계	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	○ 재활용법 개정('18.7~), 분담금 차등부과('19)	환경부
		순환이용성 평가	○ 평가계획 확정('18.4), 평가완료·개선권고('18.10) * 자발적 이행 독려를 위한 생산자 MOU 체결('18.4)	환경부 산업부
		재활용 친화형 소재·디자인 개발	○ 유니소재 지원대상 확장('18.6), 시제품 개발 지원('18.7~)	산업부
	생산자 책임 강화 (EPR)	품목 확대	○ 43개('18) → 57개('20) → 63개('22) *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('18.하, 비닐류 5종 우선확대)	환경부
		재활용의무율 상향	○ 비닐류 의무율 상향('18.6) → 그 외 품목('18.하) * 생산량 전체에 비용부담 관련 재활용법 개정('19)	환경부
		면제대상 관리강화	○ 자료제출 의무화 등 재활용법 개정('18.7~)	환경부
유통·소비	포장 최소화	운송포장재(택배)	○ 과대포장방지 가이드라인('18.10), 법적 제한기준('19)	환경부
		일반포장재	○ 전자제품 등 과대포장 기준 신설('18.9)	환경부
	1회용품 사용 최소화	1회용컵 감량·회수·재활용 대책	○ 다회용컵 인센티브, 재질단일화 자발적 협약('18.5) ○ 컵보증금제 등 재활용법 개정('18.4~), 본격시행('19)	환경부
		비닐봉투 감량대책	○ 편의점·제과점 등 자발적 협약('18.6), ○ 대형마트 사용금지 등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('18.6~)	환경부
		공공부문 사용감축	○ 공공부문 사용억제 지침 마련('18.6) ○ 지자체·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('19~)	환경부 행안부 기재부
	이행 강화	제도 개선	○ 과대포장 사전검사 의무화 등 재활용법 개정('18.7~) ○ 1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('18.6~)	환경부
		점검 강화	○ 지자체·시민사회 합동점검반 구성·점검(연중 상시) ○ 과태료 부과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('19~)	지자체 행안부
	분리·배출	홍보·모니터링	올바른 분리배출 집중 홍보	○ 매체별 홍보, 스마트폰 앱 개발·보급('18.5~) ○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('18.5~)
체계 개선			○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('18.6) ○ 분리배출 개선 포럼('18.5~), 분리수거 지침개정('18.9)	환경부
취약지역 인프라		○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및 전담 관리인 운영('18~)	환경부 기재부	

구분	전략	세부과제	추진 일정	소관부처
수거·선별	공공관리 강화	공동주택 민간수거 보고 의무화	○ 지자체 보고 의무화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(18.6~)	환경부 지자체
		비상대응체계 마련	○ 수거중단 등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(18.5) ○ 지자체 이행강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(18.6~)	환경부 지자체
		공공선별장 확충	○ 공공선별장 신설, 노후시설 개선(18~)	환경부 기재부
	수거·선별업체 지원	수거업체 수익안정화	○ 가격연동 표준계약서 보급(18.하) ○ 폐지 자율등급 가이드라인(18.6), MOU 체결(18.7) ○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(18.하)	환경부 기재부
		고물상 환경개선	○ 시설기준 마련, 입지기준 합리화방안 마련(18.하)	국토부 환경부
		선별업체 지원확대	○ EPR 생산자책임 강화로 지원금 확대(18.6~)	환경부
재활용	시장안정화	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	○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, 관리센터 구축(19) ○ 안정화재원 마련(19~22), 적체우려 시 구매·비축 * 시장연동형 EPR 도입방안 시장안정화 조치 매뉴얼 마련(18.9)	환경부
		수입관리 강화	○ 수입폐기물 사전심사 강화(18.4~) ○ 환경부-관세청 협업검사 강화(18.9)	환경부 관세청
		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	○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상향 고시 개정(18.하)	환경부 산업부
	수요확대	공공구매 확대	○ 공공사업·조달 시 우대 조치 마련(18.10)	환경부 산업부 조달청
		재활용제품 R&D	○ 고품질 선별기술 등 조기 상용화(18~19) ○ 재활용제품 품질제고 중장기 R&D 로드맵 마련(18.하)	환경부 산업부 과기부
	SRF 관리 개선	환경안전성 강화	○ 사용시설 기준강화 등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(18.6~)	환경부
관리체계 개선		○ 검사·조사 통합 운영(18.5~) ○ 행정처분 합리화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(18.6~) ○ 생활폐비닐 SRF 사용처 확대(18.6~)	환경부	
홍보·교육	실천운동	대국민 집중홍보	○ 기획보도, 예능,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홍보(18.4~)	환경부 문체부
		실천운동 확산	○ 실천협의체 구성(18.6), 국민참여 공모전 등(18.6~) * '환경의 날'(6.5)을 '플라스틱 없는 날'로 선포	환경부 문체부
	지원순환교육	수요자 맞춤형 교육	○ 방과 후 수업 환경교사 파견(18.7~) ○ 주민·문화센터 교육, 분리배출 전문가 육성(18.6~)	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
		체험기반 강화	○ 지역별 업사이클센터를 통한 전시·교육(18.5~)	환경부

# 참고 1

# 주요 개선사항

구 분		기 존	총 합 대 책
제조 생산	제품 설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유색, 복합재질, 라벨분리 어려움</li> <li>- 제품설계에 대한 인센티브, 페널티 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무색, 단일재질, 라벨분리 용이</li> <li>- 순환이용성평가 및 개선권고(新)</li> <li>- 재질구조 평가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(强)</li> <li>- PVC, 유색 페트병 등 사용금지(新)</li> </ul>
	생산자 책임 (EPR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품목) 43개</li> <li>•(의무율) 비닐류 66.6%(18)</li> <li>•(면제대상) 신고의무 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품목) 57개('20) → 63개('22)(强)</li> <li>•(의무율) 비닐류 90%(22)(强)</li> <li>* 출고량 전체에 대한 분담금 납부(新)</li> <li>•(면제대상) 자료제출 의무화(新)</li> </ul>
유통 소비	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운송) 규제대상 제외</li> <li>•(일반) 23개 품목 과대포장 규제</li> <li>과대포장 사후검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운송) 가이드라인 및 법적제한(新)</li> <li>•(일반) 전자제품 과대포장 기준신설(新), 과대포장 사전검사(强)</li> </ul>
	1회용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감량) 다회용컵 할인(100~300원)</li> <li>•(회수) 컵보증금제 폐지('08)</li> <li>•(재활용) 이중재질, 비용부담 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감량) 할인확대(판매가 10%)(强)</li> <li>•(회수) 컵보증금제, 전용수거함(新)</li> <li>•(재활용) 재질단일화, 판매자비용부담(新)</li> </ul>
	비닐봉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대형마트) 무상제공 금지</li> <li>•(편의점) 무상제공 금지</li> <li>•(제과점) 규제대상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대형마트) 사용금지, 속비닐 50% 감축(强)</li> <li>•(편의점) 대형봉투 종량제 전환(强)</li> <li>•(제과점) 무상제공 금지(新)</li> </ul>
	공공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1회용품 별도 관리방법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사용저감 지침 마련 및 실적 평가(新)</li> </ul>
분리 배출	분리배출 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분리배출 안내·교육 부족</li> <li>•현장점검의 실효성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분리배출 집중홍보(强)</li> <li>•분리배출 도우미 현장교육·모니터링(新)</li> </ul>
	분리배출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구체성 낮은 분리배출지침</li> <li>•일부지역 재활용동네마당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알기 쉬운 가이드라인(强)</li> <li>•동네마당 확대, 전담관리인 운영(强)</li> </ul>
수거 선별	공공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공동주택은 민간수거에 의존, 기초현황 미파악</li> <li>•수거중단 등 비상대응체계 無</li> <li>•공공선별장 부족, 노후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계약 내용 등 지자체 보고 및 수거 중단 시 사전통보 의무화(新)</li> <li>•비상매뉴얼, 지자체 이행강제(新)</li> <li>•공공선별장 확충 및 효율개선(强)</li> </ul>
	민간 수거·선별 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수거업체 수익 불안정</li> <li>•주거·상업지역 불법입지 문제</li> <li>•선별잔재물 처리비용 상승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가격연동 표준계약서, 폐지 가격 안정화(모니터링, 자율등급제)(新)</li> <li>•고물상 시설기준 마련, 입지규제 합리화 검토(新)</li> <li>•재활용 지원금 확대(强)</li> </ul>
재활용	시장 안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시장모니터링, 사전대응체계 미흡</li> <li>•폐기물 수입관리 미흡</li> <li>•국산재생원료 사용 촉진 부진 (재활용지정사업자 이행여부 관리 미흡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관리체계 구축, 안정화 재원 마련(新)</li> <li>•협업검사 확대, 사전검토 강화(强)</li> <li>•재생원료 이용목표율 상향 검토, 이행 모니터링 강화(强)</li> </ul>
	재활용 수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재활용 수요 제한적</li> <li>•생활폐기물 R&amp;D: 환경분야 전체 R&amp;D의 3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공공공사, 조달 등 구매 확대(强)</li> <li>•단기 상용화과제 추진, 중장기 재활용 R&amp;D 로드맵 마련(新)</li> </ul>
	SR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주민수용성, 신뢰성 부족</li> <li>•SRF 사용업체 검사·조사 빈번</li> <li>•생활계폐비닐 SRF 수요 축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대기오염배출기준 등 환경안전성 강화(强)</li> <li>•검사·조사 통합운영 등 규제합리화(新)</li> <li>•생활계폐비닐 SRF 사용 확대(强)</li> </ul>

※ (强) : 기존 관리제도 강화, (新) : 신규제도

## 참고 2

#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\*) 개요

\* 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(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)

□ (의의) 포장재·제품 생산자(제조·수입업체)에게 포장재·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PET병 등)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

※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(소비자)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(PPP: Polluters Pay Pinciple)을 생산자로 확대(Extended)

□ (대상품목) 총 43개 품목대상(포장재 4개 품목\*, 제품 39개 품목\*\*)

\* (포장재) 합성수지포장재(PET병 등), 금속캔, 유리병, 종이팩 등 4개 품목

\*\* (제품) 타이어, 형광등, 전지, 전자제품(냉장고·세탁기 등) 등 39개 품목

□ (운영체계)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·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(분담금)을 부담하고, 이를 선별업체·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

○ (환경부) 재활용 실적·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('18년 기준, 22~83%) 부여

○ (생산자)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\*을 납부

\* '17년 기준 분담금 총액은 1,914억원(포장재 1,644억원, 제품 495억원)

○ (공제조합)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·지급

※ 분담금·지원금 단가는 생산자(제조업체)·재활용업체·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'공동운영위원회'에서 심의하여 결정

< EPR 운영체계 >

